

어린이병원 간호서비스 수준관리

1 기본 현황

사업개요

회 계	일반회계		
사업기간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연례반복		
사업내용	○ 일반환아, 복합 중증장애 환아들의 치료 및 간호에 사용할 의료용품 등의 원활한 수급관리로 의료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		
사업비 (당해년도)	792,071천원	[국비]	[사비]792,071천원
		기타 (예산 외) [구비]	[기타]

사업 담당자

실·국	부서명	과 장	팀장	주무관
시민건강국	어린이병원 원무과	박경옥 570-8300	김남희 570-8301	김해자 570-8310

※실국 및 부서명은 예산서 기준으로 작성되어 현재부서와 다를 수 있습니다.

2 예산 설명

예산 총괄

(단위 : 천원, %)

구 분	2019예산액 (A)	2020예산액 (B)	증감 (B-A)	(B-A)*100/A
계	(x-) 0	(x-) 792,071	(x-) 792,071	(x-) 0
공공운영비	(x-) 0	(x-) 80,220	(x-) 80,220	(x-) 0
의료및구료비	(x-) 0	(x-) 711,851	(x-) 711,851	(x-) 0

산출근거

과목구분	2020년 예산내역
------	------------

과목구분	2020년 예산내역		
공공운영비	○ 간호부 의료장비 등 장비 유지비 80,220,000원	=	80,220천원
의료및구료비	○ 병동 의료용품 487,301,000원	=	487,301천원
	○ 환자간호관리 소모품 39,000,000원	=	39,000천원
	○ 입원환자 피복 등 구료비 185,550,000원	=	185,550천원

3 사업설명

□ 사업목적

- 입원환자에게 필요한 물품 및 린넨류 구매로 최상의 맞춤형 전인간호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

□ 사업근거

- 법령상 근거
 - 의료법 제4조(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의 의무), 제36조(준수사항) 및 제47조(병원 감염예방)
 - 환자안전법 제3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, 제4조(보건의료기관의 장과 보건의료인의 책무)
 -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3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) 및 제7조(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의무).
 - 보건의료기본법 제5조(보건의료인의 책임) 및 제6조(환자 및 보건의료인의 권리)
 -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□ 사업내용

- 위 치 : 서초구 현릉로260 서울특별시 어린이병원
- 규 모
 - 건 물 : 25,816 m^2 (본관 14,872 m^2 , 발달센터 10,944 m^2)
 - 부 지 : 46,421 m^2 ,(대지 13,910 m^2 . 임야32,511 m^2)
 - 가동 병상수 : 208 병상 (허가병상 기준)
- 사업기간 : 2020.01.01. ~ 2020.12.31
- 사업내용 :
 - 환아 진료와 간호에 사용할 의료용품 구매

- 환자 피부, 두피 위생 관리 및 영양공급 등 환자 간호관리에 필요한 물품 구매
- 전신마비 등 중증장애 입원환자의 배뇨 및 배변관리를 위한 일회용기저귀 및 개인위생관리를 위한 린넨류 구매

○ 총사업비 : 792,071천원

추진경위

- 입원 복합 중증 장애 환자 및 내원환아의 치료와 간호를 위해 의료용품 등의 구매 필요

2020년도 추진일정

(단위 : 천원)

사업추진절차	추진기간	예산집행금액	추진세부내용
계		792,071	
공공운영비	2020.01~2020.12	80,220	의료기기 일상점검 및 부품 교체 등
의료및구료비	2020.01~2020.12	711,851	병동별 물품 요구에 따른 구매 및 배부

4 사업효과

최근 3년 추진실적

향후 기대효과

- 환자치료 및 간호관리에 사용되는 장비에 대한 신속한 유지보수 관리로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료서비스 제공
- 환자 전인간호에 필요한 물품을 적기 구매하여 활용함으로써 환자의 안위 및 시민에게 신뢰받는 공공의료서비스 환경 구축